

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]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운영(안)

코로나-19 의심(격리)환자, 확진환자 및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대학원 신·편입생, 재학생, 수료생 보호·관리 방안으로 2023학년도 1학기에 대학원 「특별휴학」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
- 아 래 -

1. 특별휴학 허용 시행(2023학년도 1학기)

가.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·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**

- **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시적 시행**

나. 대상 : 대학원 신·편입생, 재학생, 수료생으로 다음 1), 2)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, 지속할 수 없는자 (단순 확진이 아닌 '격리중'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)

2)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·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

-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(<http://www.0404.go.kr/>)에서 확인 가능

다.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(안)

* **대학행정실에서는 특별휴학 시행 안내 관련 공지 및 이메일 안내**

1) 특별휴학 신청 학생

- 소속 학과/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[양식1] 제출

- 제출서류

① 특별휴학원서[양식1]

② 증빙서류 (*필수제출)

-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양성 판정 확진**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

증빙서류 : **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(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)**

-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

-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, 최근 방문·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, 학업을 시작·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

-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,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

2) 학생소속 학과의 주임교수(또는 지도교수)

- 학생이 제출한 특별휴학원서[양식1]에 기재된 휴학사유를 검토 후 확인서[양식2] 작성

- **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(인터뷰) 실시한 후 확인서에 면담소견 작성함**



3) **대학행정실**

- 특별휴학원서[양식1] 및 주임교수(또는 지도교수) 확인서[양식2]를 단과대학장(학부장) 전결로 대학원 행정팀으로 **대내공문**으로 발송

4) **후속 조치**

- 대학원장 승인 후 대학원행정팀에서는 학사행정(AMS)에서 휴학 처리(학과/대학행정실로 학적변동 처리 결과 안내 예정)
- **학과/대학행정실**에서는 수업료 반환 처리함

라. 내·외국인 신·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

- **신(편)입생 첫 학기의 경우,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**

마. 학과(부) 및 단과대학에서는 한시적 허용에 적합한 사유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함

- 타 대학원 진학, 일신상의 사유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청함

바. **2023년 3월 17일(금) 16시까지** 접수 완료된 휴학원서까지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진행 예정

- **3월 17일(금)**에 접수된 휴학원서의 경우 **3월 17일(금) 17시까지 학적변동 (휴학)처리 완료**해야함
- 3월 17일(금) 16시 이후부터는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

사. **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**

* 단,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

- 1)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
- 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
(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,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)
- 3)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
(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)

아. **대학행정실/학과**에서는 정규등록기간에 미등록한 학생이 최종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, 최종 미등록자는 **2023년 3월 17일(금) 17시까지 제적처리 완료**